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목 차>

1. 기관에 대한 제재 .....	1
(1) 기관제재에 대한 경합가중제도 도입 .....	6
(2) 타기관 제재에 대한 가중제도 도입 .....	14
(3)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 미이행시 가중제도 도입 ..	23
2. 임원에 대한 제재 .....	33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병과 근거 마련 .....	38
(2) 임원 연속 위반행위 합산 제재를 위한 근거 마련 .....	46
3.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	55
4. 금전제재에 대한 가중사유 신설 .....	68

<b>대상</b>	<b>기관에 대한 제재</b>
-----------	------------------

< 규제 개요 >

1. 규제사무명	기관제재에 대한 제재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자	이름	이영평
	담당부서(과)	금융제도팀		직급	사무관
	국장	손병두		연락처	02-2156-9683
	과장	김연준		이메일	ypyunglee@korea.kr
3. 근거법령·고시 등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제20조의2, 제24조제2항·제3항, 제26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금융기관 전체				
5.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별도설정 불필요 - 훈령 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의해 감독규정 전체에 대한 존속기한 기설정 및 운영중				
6.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화 <input type="checkbox"/> 현행규제내용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p>① 검사를 나가서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가장 중한 1건 기준으로 제재하고, 여러 건을 모아 경합가중해서 제재하지 않고 있음</p> <p>② 검사·제재규정 제3조에서 제재를 “금융위 또는 금감원장이 이 규정에 의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금융기관에 대한 별도의 검사권 및 제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감독기관(신협중앙회 등)의 제재조치는 동 규정상 제재에 해당되지 않음</p> <p>- 이로 인해 다른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종전 제재조치는 제재가중·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불가능하고, 종전 조치의 제재주체에 따라 제재수준이 달라져 제재대상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p> <p>③ 경영상 취약점 개선을 이유로만 양해각서 및 확약서 체결 가능</p>				

	<p>□ 신설(강화)규제내용</p> <p>① 동일한 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행위가 일정 건수 이상인 경우 1단계 가중하는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를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검사에서 기관주의 대상이 되는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4건 이상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관경고로 가중할 수 있음</li> <li>- 동일 검사에서 기관경고 대상이 되는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4건 이상 발견되는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로 가중할 수 있음</li> </ul> <p>② 제재가중·감면 적용시 종전 제재조치에 신탁중앙회 등 다른 감독기관의 조치를 포함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를 이미 받고도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자에 대하여 종전 제재주체가 어떤 기관인지 불문하고 제재를 가중·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제재 실효성·형평성 제고</li> </ul> <p>③ 법규위반에 대해서도 약속서·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이행이 미흡함에도 가중하여 제재하지 않을 경우 제재의 형평성에 반하는 불합리점이 존재</p> <p>* ①법규위반 행위 당시 위법·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없이 행하여진 경우,      ②위법·부당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제재보다 약속서 이행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약속서·양해각서 체결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법규위반에 대한 약속서·양해각서 이행이 미흡한 경우 기존 제재를 취하거나 1단계 가중하는 제도를 도입</li> </ul>
<p>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p>	<p>기관에 제재수준을 금융업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필요한 사항을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에 위임하는 체계</p> <p>* (예) 은행법제53조(은행에대한제재) → 검사·제재규정제17조(기관에대한제재)</p>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① 동일한 검사에서 동일한 제재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4개 이상 경합시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24조제2항)
- ② 기타 감독기관의 기존 제재를 고려한 가중·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제26조)
- ③ 법규위반에 대해서도 필요시 확약서·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미이행시 가중사유로 감안하여 제재수위를 상향 (제20조의2, 제24조제3항)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의2(확약서·양해각서) ① 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경영상의 취약점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의 개선을 위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lt;단서 신설&gt;</p> <p>&lt;신 설&gt;</p>	<p>제20조의2(확약서·양해각서) ① --- ----- ----- -- <u>취약점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관련법규 위반(기관주의의 사유에 한한다)</u>----- . <u>다만, 금융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확약서 제출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u></p> <p><u>1. 행위 당시 위법·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없이 행</u></p>

<신 설>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경영상의 심각한 취약점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과 이의 개선대책의 수립·이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하여진 경우  
2. 위법·부당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제재보다 확약서 이행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  
----- 취약점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관련법규 위반(기관경고 이하의 사유에 한한다)-----

-. 다만, 금융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행위 당시 위법·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없이 행

하여진 경우  
2. 위법·부당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제재보다 양해각서 체결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기관제재에 대한 경합가중제도 도입

## 1. 규제의 필요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검사를 나가서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가장 중한 1건 기준으로 제재하고, 여러 건을 모아 경합가중해서 제재하지 않고 있음\*

\*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3년 이내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 제재를 받고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하는 누적가중제도는 시행 중(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제24조제1항)

※ 임·직원 제재의 경우 경합가중제도\*를 이미 적용중

\*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다수 적발되는 경우 제재를 가중하는 제도(검사·제재규정 제24조제3항)

○ 금융기관이 다수의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가장 중한 기관제재 1건으로 조치\*됨에 따라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 예) 기관경고 3건 → 기관경고, 기관경고 1건 → 기관경고

○ 여러 건의 위반을 한번에 조치하는 경우와 한건씩 분리하여 조치(누적가중 가능)하는 경우간 제재수준이 달라지는 문제\*

\* 예) 기관경고 3건 → (합건조치) 기관경고, (분리조치) 영업정지(누적가중)

###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유지, 예금자·투자자 등 금융수요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위법·부당성 정도에 비례하는 적절한 수준의 제재 필요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

##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은 위반행위 건수를 고려하여 제재수준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고 금융 거래 질서 유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동일 검사에서 서로 관련 없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가중하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에 맞는 제재 구현
  -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한번에 조치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조치하는 경우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기관제재의 형평성과 합리성 제고
  - 금융기관의 사전적·자발적 위법 시정기능 유도 및 위법·부당행위의 재발 방지 기대

## 2. 대안의 발굴 · 검토

###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동일 검사에서 서로 관련 없는 다수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가장 중한 수준의 조치로 1회 제재
  - 다수의 기관제재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반정도에 비례하여 제재가 상향되지 않음

< 비규제대안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기관제재에 대하여 경합가중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규제대안은 상정하기 어려움

< 규제대안 :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 >

□ 금융기관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기관경고, 기관주의에 한함)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함\*

\* 기관경고 4건 → 일부 영업정지, 기관주의 4건 → 기관경고

○ 임직원 제재의 경우 위법·부당행위가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으므로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가 임직원 제재보다 **완화된 형태로 도입\***

\* 동 경합가중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는 점 및 업무범위가 넓은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동일 검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다수 적출될 수 있어 기관제재 가중이 지나치게 빈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금감원 협의를 통해 4개로 결정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은 감독당국의 규제 여부가 아닌 그 수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간의 자율성·창의성과는 무관

< 해외사례 분석 >

□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기관제재 방식이 상이(주요국의 경우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없음)하여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기관제재에 관한 경합가중 기준과 관련하여 주요국과의 직접적 비교는 곤란

○ (우리나라) 인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 (미국) 합의서 체결요구, 중지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 인가취소

○ (영국) 허가조건 변경, 허가취소, 자격정지, 인가취소, 신규진입규제

다만, 주요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신분제재보다 기관제재 중심으로 제재가 이루어지고 감독당국의 기관제재에 관한 재량의 폭이 넓게 인정됨\*\*

\*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과 달리 기관제재가 임직원 제재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기관주의·경고가 대부분을 차지('14년 기준 83.7%)

\*\* 주요국의 기관에 대한 금전제재는 당국의 폭넓은 재량권 하에 거액의 제재금 부과: (美 SEC) 도이치뱅크가 '08년 금융위기사 입은 손실을 숨긴 것에 대해 \$5,500만의 과징금 부과('15) / (英 FSA) Libor 금리조작과 관련하여 UBS에 대해 £1.6억의 제재금 부과('12) ⇨ 우리나라의 경우 과징금 건당 평균 2.7억원 수준('14 기준)

#### < 이해관계자 협의 >

사전협의 및 규정변경예고('15.11.6 ~ '15.12.16)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임직원 제재와 달리 기관제재에는 경합가중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에 부합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여러 건의 위반을 한번에 조치하는 경우와 한건씩 분리하여 조치(누적가중 가능)하는 경우간 제재수준이 달라지는 문제점 발생

○ 경합가중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임직원 제재와 일관되지 않는 문제점 발생

####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비규제대안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규제대안으로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곤란함

#### < 결론 >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은 기관제재의 형평성·적정성 제고, 금융기관의 자체 위법 시정기능 유도 등에 있어 현행유지안 및 고려 가능한 대안중 가장 우수하므로 도입 필요성이 상당함

###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현행유지안 : 기관제재에 대한 경합가중제도 미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해당사항 없음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과규제자이외 기업소상공인			
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정성적 분석	<input type="checkbox"/> 현행유지안의 경우 다수의 기관제재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반정도에 비례하여 제재가 상향되지 않는 문제점 존재 ○ 다수의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가장 중한 기관제재 1건으로 조치됨에 따라 비례의 원칙에 반함 <input type="checkbox"/> 여러 건의 위반을 한번에 조치하는 경우와 한건씩 분리하여 조치(누적가중 가능)하는 경우간 제재수준이 달라지는 문제 <input type="checkbox"/> 경합가중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임직원 제재와의 일관성 미흡		

규제대안 : 기관제재에 대한 경합가중제도 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해당사항 없음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과규제자이외 기업소상공인			
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정성적 분석	<input type="checkbox"/> 규제대안은 위반행위에 부합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다수의 위반행위 적발시 가중제재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자체 위반행위 억제 노력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위반행위 억제라는 감독목적보다 효율적으로 달성 가능		

##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인력 및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 결과 제재대상 위반행위가 발견 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① 제재실시부서는 자체 수립한 검사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

② 제재실시부서는 검사 등을 종료한 후 제재조치안 및 검사서 등을 작성하여 제재심의국에 심사·조정을 의뢰

③ 제재심의국은 심사·조정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

④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검사결과 제재조치안을 심의

⑤ 제재조치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는 제재의 경우 금융위원회 부의 등을 통해 조치

○ 금번 추가하고자 하는 기관제재 경합가중 제도는 검사결과 적발된 금융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제재 수준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인력·시일 및 예산 소요가 없음

- 위에 나열한 제재절차 중 제재실시부서의 제재조치안 작성(②), 제재심의국의 심사·조정(③) 및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④) 과정에서 기관제재 경합가중 제도를 적용하게 되며, 별도의 행정적 절차나 수행 인력이 필요하지 않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임직원 제재의 경우 다수 위반행위시 경합가중제도를 이미 운영해 오고 있으므로 감독당국이 검사·제재업무시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를 집행함에 있어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제재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신분제재에서 기관제재로 제재의 중심축을 전환하는 큰 틀에서 기관제재의 실효성 및 제재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명확한 경합가중 기준을 설정하여 제재대상 금융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음
- 해외 주요국과의 제재방식 상이로 인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국내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와 비교시, 임직원 제재에 대해서는 이미 경합가중제도가 운영중이므로 과도한 제재강화가 아님

- 경합가중제도 기준(4건)의 적정성 및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도,
  - 임직원 제재의 경우 2건 이상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반면, 기관 제재의 경우 경합가중제도 신규 도입 등을 고려하여 4건 이상시 (기관경고, 기관주의에 한함) 가중토록 하였으므로 과도하지 않음

####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은 위반행위에 부합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적·자발적 위법 시정기능을 유도하고 위법·부당 행위의 재발 방지 기대

####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사전협의 및 규정변경예고('15.11.6 ~ '15.12.16)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 (2) 타기관 제재에 대한 가중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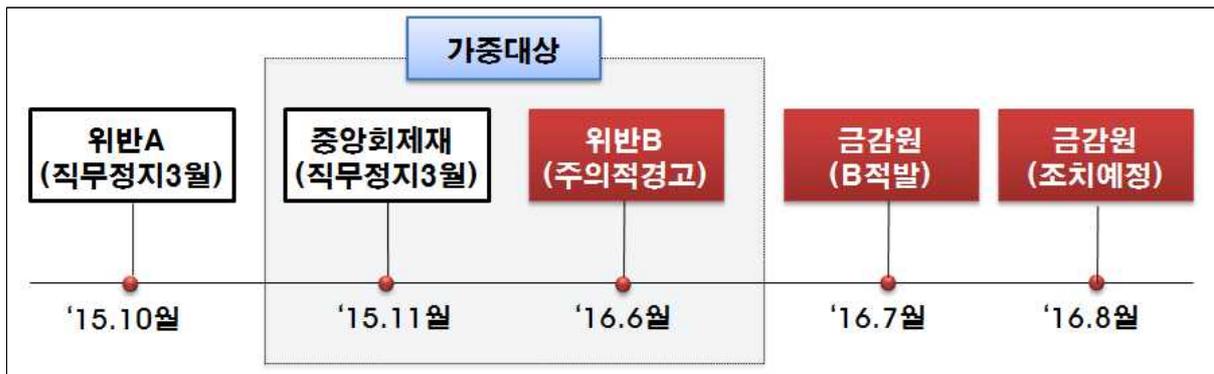
### 1. 규제의 필요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검사·제재규정 제3조에서 제재를 “금융위 또는 금감원장이 이 규정에 의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 금융기관에 대한 별도의 검사권 및 제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감독기관(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의 제재조치\*는 검사·제재규정상 제재에 해당되지 않음
    - \*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제1항제3호, 제83조, 제84조, 제96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4조제3항제1호, 제3항제3호, 제95조(농·수협, 산림조합에 준용)
- 이로 인해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더라도 종전 제재가 다른 감독기관의 제재조치인 경우 가중제재가 불가능하여 제재 실효성 저하
  - (기관)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단계 가중
  -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고도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단계 가중 가능 등
-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동일 감독기관으로부터 각각 제재를 받는 경우 제재가 가중·감면되나, 다른 감독기관으로부터 교차검사를 받으면 가중·감면되지 않는 등
  -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제재되어야 하고, 제재대상자의 위법성·책임과 무관한 사유로 제재가 달라질 수 없음
- 제재주체에 따라 제재수준이 달라져 제재대상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

### < 타기관 제재에 대한 가중 관련 가상사례 >

- 신협중앙회는 甲신협에 대한 검사에서 '15.11월 이사장에 대하여 직무 정지 3월의 제재조치
    - 이후 이사장이 '16.6월 재차 위반행위를 하고, 금감원이 '16.7월 이를 적발하여 제재조치를 할 예정
    - 신협중앙회가 취한 제재를 검사·제재규정상 제재로 본다면 검사·제재 규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가중이 가능하나, 신협중앙회의 제재는 검사·제재규정상 제재가 아니므로 가중이 되지 않는 불합리 발생
- \* 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문책경고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경고·주의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유지, 예금자·투자자 등 금융수요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 또는 금감원 외의 다른 감독기관의 제재조치시 이를 가중·감면 사유로 고려하도록 할 필요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

##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타기관 제재에 대한 가중제도 도입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형평성 제고 및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 구현
    -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제재조치뿐 아니라 법에 근거한 다른 감독기관의 제재도 이를 고려\*하여 가중·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사전적·자발적 위법 시정기능 유도 및 위법·부당행위의 재발 방지 기대
- \* 금감원 검사 착수시 해당 금융기관에 종전 검사·제재(다른 기관 포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종전 제재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파악하고 있음

## 2. 대안의 발굴 · 검토

###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금융기관에 대한 별도의 검사권 및 제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감독기관(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의 제재조치는 검사·제재규정에 근거한 제재조치가 아님
  - 이로 인해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더라도 종전 제재가 다른 감독기관의 제재조치인 경우 검사·제재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시 가중하여 제재가 불가능

< 비규제대안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타기관 제재가 있는 경우 금융위 또는 금감원 제재시 이를 가중·감면 사유로 고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규제대안은 상정하기 어려움

< 규제대안 : 타기관 제재에 대한 가중제도 도입 >

- 금융위 또는 금감원 외의 다른 감독기관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제재대상자에 취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감안하여 제재를 가중·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 원칙적으로 1단계 가중이며, 가중·감면은 별도의 조항(검사·제재규정 제24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46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고 타기관 제재도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가중할 수 있음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타기관 제재에 대한 가중제도 도입은 감독당국의 규제 여부가 아닌 그 수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간의 자율성·창의성과는 무관

< 해외사례 분석 >

- 해당사항 없음

< 이해관계자 협의 >

- 사전협의 및 규정변경예고('15.11.6 ~ '15.12.16)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히 사항은 없었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동일한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동일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 제재가 가중·감면되나, 다른 감독기관으로부터 교차검사를 받으면 가중·감면되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형평성에 문제

- 규제 강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중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경우 감면 제도\*만 도입되는 결과가 되는데, 같은 논리(제재 형평성 등)를 감면에는 적용하면서 가중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

\* 사후적경합의 기준이 되는 종전제재에 타기관 제재를 포함하여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 또한 함께 도입될 예정(규제완화에 해당하여 본 분석에서는 제외)

**< 타기관제재 가중제도 규정안 >**

**검사·제재규정 제26조(기타 감독기관 조치의 반영)**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 외의 감독기관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제재대상자에 취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재의 종류를 정하거나 제재를 **가중·감면**할 수 있다.

⇒ 타기관제재에 따른 “가중제도” 뿐 아니라 “감면제도” 또한 함께 도입

- 위반행위가 아니라 제재주체에 따라 제재가중·감면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제재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책임주의에 반할 소지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비규제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규제대안으로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곤란함

**< 결론 >**

- 타기관 제재에 대한 가중제도는 제재의 적정성·실효성·형평성 제고 등에 있어 현행유지안 및 고려 가능한 대안중 가장 우수하므로 도입 필요성이 상당함

###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현행유지안 : 타기관 제재에 대한 가중제도 미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해당사항 없음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정성적 분석		<input type="checkbox"/> 현행유지안의 경우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b>위법·부당행위를 반복</b> 하더라도 제재주체가 상이할 경우 <b>가중제재가 불가능하여 제재 실효성 저하</b> <input type="checkbox"/> <b>동일한 위반행위</b> 라 하더라도 <b>동일 감독기관</b> 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 <b>제재가 가중·감면</b> 되나, <b>다른 감독기관</b> 으로부터 교차검사를 받으면 <b>가중·감면되지 않아 제재 형평성에 문제</b> <input type="checkbox"/> 규제 강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가중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경우 감면제도만 도입</b> 되는 결과가 되는데, 같은 논리(제재 형평성)를 감면에는 적용하면서 <b>가중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b>		
규제대안 : 타기관 제재에 대한 가중제도 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해당사항 없음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정성적 분석		<input type="checkbox"/> 규제대안은 제재주체와 상관 없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능하게 하여 <b>제재의 형평성을 제고</b> 하고 <input type="checkbox"/> 위반행위를 반복하면 종전 제재가 어떤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인지를 불문하고 <b>가중제재</b> 하여 금융기관 자체적 위반행위 억제 노력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b>위반행위 억제</b> 라는 감독목적은 보다 <b>효율적으로 달성</b> 가능		

##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인력 및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 결과 제재대상 위반행위가 발견 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 ① 제재실시부서는 자체 수립한 검사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
  - ② 제재실시부서는 검사 등을 종료한 후 제재조치안 및 검사서 등을 작성하여 제재심의국에 심사·조정을 의뢰
  - ③ 제재심의국은 심사·조정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
  - ④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검사결과 제재조치안을 심의
  - ⑤ 제재조치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는 제재의 경우 금융위원회 부의 등을 통해 조치
  - 금번 추가하고자 하는 타기관 제재 가중제도는 검사결과 적발된 금융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제재 수준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인력·시일 및 예산 소요가 없음
  - 위에 나열한 제재절차 중 제재실시부서의 제재조치안 작성(②), 제재심의국의 심사·조정(③) 및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④) 과정에서 타기관 제재 가중제도를 적용하게 되며, 별도의 행정적 절차나 수행 인력이 필요하지 않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검사시 타기관 제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제재수준을 결정할 때 반영하면 되므로 타기관 제재에 대한 가중제도를 집행함에 있어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해당사항 없음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타기관 제재에 대한 가중제도는 기관제재의 실효성 및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자체적인 위반행위 방지 노력 강화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도입 필요
- 타기관 제재에 대한 가중제도는 결과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제재의 실효성·형평성 제고 및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 원칙을 구현하는 과정의 불가피한 결과
- 타기관 제재를 감안하여 제재가 감면되는 경우도 예정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규제 합리화에 해당

####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타기관 제재에 대한 가중제도 도입은 위반행위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제재하여 금융기관 및 임직원의 사전적·자발적 위법 시정기능을 유도하고 위법·부당행위의 재발 방지 기대

####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사전협의 및 규정변경예고('15.11.6 ~ '15.12.16)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 (3)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 미이행시 가중제도 도입

#### 1. 규제의 필요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확약서·양해각서 제도는 체결사유가 **경영상 취약점 개선\***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법규위반시 자체시정이 합리적임에도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

\* 경영상 취약점의 경우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확약서·양해각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음

□ 따라서 법규위반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확약서·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제재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 ①법규위반 행위 당시 위법·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없이 행하여진 경우,  
②위법·부당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제재보다 확약서 이행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약서·양해각서 체결 가능

○ 법규위반에 관한 확약서·양해각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미흡한 경우 기존에 취하지 아니한 제재를 그대로 취하거나 또는 가중 사유로 감안하여 제재수위를 상향할 필요

- 당초 취하지 아니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이 기관제재로 인해 파생되는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선 의지가 없음에도 동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음\*

\* '10년 동양증권은 금감원과 계열사 발행 기업어음 보유 규모(심각한 경영상 취약점) 축소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악용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13년 동양증권 사태를 야기 →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에는 이행 담보적 규정이 필수

### < 가중제재를 하지 아니할 경우 가상 사례 >

- 기관주의 제재조치('13.12.1)를 받은 사실이 있는 甲보험사는 위법행위 (A)가 적발되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어야 하나 **확약서 체결**('14.6.30)을 통해 위법행위를 개선기로 함
  - 甲보험사는 위법행위(B)를 반복하여 기관주의 조치를 재차 부과 ('15.3.31) 받았지만,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신규사업 진출** ('15.6.30)을 차질 없이 완료함
- 만약, '15.6.30일에 확약서 체결이 없이 기관주의를 받았더라면 '15.3.31일 제재는 기관주의에서 기관경고로 **상향\***되고 甲보험사는 **대주주 결격사유\*\***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을 할 수 없었음

\* 최근 3년 이내에 기관주의 이상 제재를 2회 이상 받고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검사·제재규정 제24조제3항)

\*\*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대주주 적격을 제한(보험업감독규정 별표4.1.바)

#### < 甲보험사 제재조치 경과내역 >

기관 주의	위법 행위(A)	A관련 기관주의 대신 확약서 체결	위법 행위(B)	B에 대한 기관주의	신규사업 진출완료	확약서 불이행 제재 조치
'13.12.1	'14.3.31	'14.6.30	'14.10.1	'15.3.31	'15.6.30	'15.9.30
				확약서 없었다면 기관경고	확약서 없었다면 신규사업진출 불가	확약서체결로 유예된 기관경고 부과 필요

- 금감원의 확약서 이행여부 점검 결과 그 이행이 미흡하여 '15.9.30일 기관주의 제재조치를 취함
  - ⇒ 확약서 체결에 따라 ①'15.3.31일 기관경고 가중제재 및 ②'15.6.30일 신규사업 진출 제한을 면하고 최종적으로 기관주의 제재조치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감독당국이 이를 고려하여 제재가중을 가능토록 하는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

##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유지, 예금자·투자자 등 금융수요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법규 등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필요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

- 특히,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 체결 제도를 새로 도입함에 있어 그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 대비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제재 근거를 들 필요성이 있음

##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 미이행시 가중제도를 도입하고 이행이 미흡한 경우 취하지 아니한 제재를 그대로 취하거나 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둬으로써 확약서·양해각서의 이행 담보적 효과를 도모하고

- 확약서·양해각서 제도를 활성화하여 금융기관의 자체 위법 시정기능 강화 및 위법·부당행위의 재발 방지 기대

## 2. 대안의 발굴 · 검토

###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확약서·양해각서의 체결사유가 경영상 취약점 개선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법규위반시 자체 시정이 합리적인 상황임에도 즉시 제재조치함

< 비규제대안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행이 미흡한 경우 당초 받았어야 할 제재를 가중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규제대안은 상정하기 어려움

〈 규제대안 :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 미이행시 가중제도 도입 〉

-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 취하지 아니한 제재를 그대로 취하거나 또는 1단계 가중하여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재를 부과해야 하나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반사유에 대해 자율 개선을 조건 (확약서·양해각서 체결)으로 제재를 유예하는 것임\*

\* 확약서·양해각서의 경우 일정 기간(3개월 등)을 정하여 이행상황을 금감원에 보고 하고 양 측 모두 실질적으로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효력 유지

- 다만,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 제도와 함께 그 이행이 미흡한데에 따른 가중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 확약서·양해각서에 구속력이 없음을 악용해 법규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음으로써 제재의 형평성에 반할 우려
  - 금융기관이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제재를 면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달리 제재의 방법이 없음
  - 확약서·양해각서 미이행시 당초 받았어야 할 제재만을 부과할 경우 법규위반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음에도 금융기관 경영진의 필요에 따라 제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부작용 우려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금융기관이 경영상 취약점, 법규위반에 대해 자체 시정하도록 하는 확약서·양해각서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해외사례 분석 >

-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3~5 등급 은행에 대해 제재
  - 3등급 은행에 대해 비공식 조치인 양해각서(MOU)를 통한 문제시정이 원칙이고, 4, 5등급 은행에 대해서는 즉시 공식적 제재조치 가능
    - 상시감시, 방문, 검사 등을 통해 양해각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은행 측 조치의 적정성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 양해각서 조건 이행, 현저한 경영상태 개선, 양해각서 관련 부문에 대한 새로운 행정조치, 폐업·합병시 양해각서 종료
  - 양해각서 체결 후 경영진의 적정한 시정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제재조치 가능

< Risk Management Manual of Examination Policies\* >

An MOU provides a structured way to correct problems at institutions that have moderate weaknesses, but have not deteriorated to a point requiring formal corrective actions.

⇒ 보통 수준의 취약점에 대해 MOU 체결이 가능

Examiners should consider recommending formal enforcement action pursuant to Section 8 of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for institutions rated 3 if management appears unwilling to take appropriate corrective measures, and for all composite 4- or 5-rated institutions.

⇒ 시정 의지가 없는 경우 공식적인 제재조치가 가능하며 그 수준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음(제재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 MOU 체결이 가능함을 의미)

\* 은행 감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미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발간한 매뉴얼

- 미국은 비공식 조치인 양해각서 제도와 유사하게 공식적 제재조치인 합의서(written agreement)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합의서는 위반행위가 심각하지 않을 때 이를 시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해당 금융기관이 체결하는 문서로 중지명령\* 등 중한 제재가 취해지기 전에 체결되고

\* 중지명령은 금융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중지토록 하는 제재조치이며, 그 사유는 법규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감독당국이 부과한 승인 조건의 위반, 감독당국과의 합의서 사항 위반 등이 해당됨

○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지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됨

\* 미국 연방예금보험법(FDIA) Sec. 8(b)(1); 12 U.S.C. Sec. 1818(b)(1), 동 법 Sec. 8(i)(2); 12 U.S.C. Sec. 1818(i)(2)

⇒ 위반행위에 대해 체결이 가능하고 미이행시 중한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 제도와 유사

#### < 이해관계자 협의 >

사전협의 및 규정변경예고('15.11.6 ~ '15.12.16)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현행 규정 하에서는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기존 규제와 비교하기 어려움

○ 다만,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 제도와 함께 미이행에 따른 가중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 의지가 없음에도 확약서·양해각서 제도를 악용하여 제재를 지연시키는 도덕적 해이 발생 소지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비규제대안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규제대안으로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곤란함

< 결론 >

-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 미이행시 가중제도 도입은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감면해준 확약서·양해각서의 이행담보적 측면을 고려할 때, 현행유지안 및 고려 가능한 대안중 가장 우수하므로 도입 필요성이 상당함

###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현행유지안 :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 미이행시 가중제도 미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해당사항 없음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정성적 분석	<input type="checkbox"/> 현행 규정은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규위반에 대하여 즉시 제재 가능 <input type="checkbox"/> 다만,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 제도와 함께 그 이행이 미흡한데에 따른 가중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 존재 ○ 확약서·양해각서에 구속력이 없음을 악용해 법규위반에 따른 제재를 감면 받음으로써 제재의 형평성에 반할 우려 <input type="checkbox"/> 확약서·양해각서 미이행시 당초 받았어야 할 제재만을 부과할 경우 금융기관 경영진의 필요에 따라 제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우려 ○ 확약서·이행각서의 충실한 이행 담보 측면에서도 동 제도 도입이 불가피		
규제대안 :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 미이행시 가중제도 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해당사항 없음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정성적 분석	<input type="checkbox"/> 규제대안은 위반행위에 부합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적·자발적은 물론 사후적 위법 시정 기능을 유도하고 법규위반의 재발 방지 기대		

##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인력 및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
  - 금융감독원은 법규위반 사유에 대해 확약서·양해각서 제도로 인해 법규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신 확약서·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그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보고 받고 점검
  -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 미이행시 가중제도는 이미 시행 중인 경영상 취약점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 제도와 절차상 유사하게 운용되고 그 이행이 미흡한 경우 기존에 취했어야 할 제재조치가 취해지는 것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인력·시일 및 예산 소요가 없음

###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기관제재의 경우 다수의 가중제도를 이미 운영해 오고 있으므로 감독 당국이 검사·제재업무시 가중제도를 집행함에 있어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해당사항 없음

##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 기술규제 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 제도를 도입하고 그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 한하여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재를 감면해준 확약서·양해각서의 이행 담보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불가피
- 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법규위반에 대한 양해각서 미이행시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중
  - 또한, 법규위반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가중사항으로 제재를 가중하지 않을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 상황에 따라 감독당국이 취하지 아니한 제재를 그대로 취하거나 또는 가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과도한 제재 강화가 아님

####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 미이행시 가중제도 도입은 금융기관의 법규위반 시정기회의 불이행에 따른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적·자발적은 물론 사후적 위법 시정기능을 유도하고 법규위반의 재발 방지 기대

####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사전협의 및 규정변경예고('15.11.6 ~ '15.12.16)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히 사항은 없었음

<b>대상</b>	<b>임원에 대한 제재</b>
-----------	------------------

< 규제의 개요 >

<b>1. 규제사무명</b>	임원에 대한 제재				
<b>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b>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이영평
	담당부서(과)	금융제도팀		직급	사무관
	국장	손병두		연락처	02-2156-9683
	과장	김연준		이메일	ypyunglee@korea.kr
<b>3. 근거법령·고시 등</b>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제1항제2호가목,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제3항				
<b>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b>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금융기관 전체				
<b>5. 규제존속기한</b>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별도설정 불필요 - 훈령 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의해 감독규정 전체에 대한 존속기한 기설정 및 운영중				
<b>6. 구분</b>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화				
<b>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b>	<input type="checkbox"/> 현행규제내용 ① 직무정지는 중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 해임권고 사유에는 해당되나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가 가능 ②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신설(강화)규제내용 ①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시 해임권고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임권고를 직무정지와 함께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				

	<p>②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이 금융기관을 옮겨 다니며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행한 경우, 과거 재직 금융기관에서의 위법행위도 함께 고려하여 제재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p>
<p><b>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b></p>	<p>임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금융업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는 체계</p> <p>* (예) 은행법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 검사·제재규정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p>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① 해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임원 해임권고시 ‘직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제2호, 제4항)
- ②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제재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과거 재직 하였던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를 고려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 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 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 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 <u>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목의 1</u> <u>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u> <u>는 경우</u> <u>&lt;신 설&gt;</u>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u> <u>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u> <u>위해 필요한 경우</u>

<신 설>

3. ~ 5.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④ (생 략)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② (생 략)

<신 설>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  
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  
반행위를 한 금융기관의 임원이 과  
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 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  
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제1호의 조치  
를 동항제2호의 조치와 함께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  
반행위를 한 사실상 이사·감사 등  
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미등기 임원 등이 과거 재직하였던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 ----- -----.</p>
---	---

#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병과 근거 마련

## 1. 규제의 필요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기관 임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는 경우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권고'의 제재를 내릴 수 있음

\*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 임원의 중대 위반행위가 이에 해당

○ 해임권고의 제재 효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주주총회를 거쳐 해당 임원을 해임하는 것이 필요한데, 금융기관이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등에는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존재

□ 따라서 해임권고의 제재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임권고와 업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규정은 명시적 병과규정이 없는 상황임

\* 업무정지는 해임권고를 내릴 수 있는 각목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렀으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 제재처분 가능(검사·제재규정 제18조제1항제2호)

### < 부당한 직무수행 관련 사례 >

□ 증선위는 효성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고, 회장 조석래, 대표이사 이상운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14.7월)

○ 해임권고 조치에 따라 이사회는 해임권고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등 지체 없이 해임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나,

○ 효성은 해임권고 안건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해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당사자는 현재까지 부당한 직무수행 중

##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유지, 예금자·투자자 등 금융수요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법규 등을 위반한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 필요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

- 특히,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중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할 필요

##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중대 위반행위를 저지른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 규정을 도입하여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금융질서 유지, 소비자 보호 개선에 기여

- 임원에 대하여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사전적·자발적 위법 시정기능 유도 및 위법·부당행위의 재발 방지 기대

## 2. 대안의 발굴·검토

###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직무정지는 중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 해임권고 사유에는 해당되나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가 가능

- 따라서 중대 위반행위를 한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가 가능하고, 다만 위반행위에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정지

## 조치로 대체가 가능한 선택적 구조

〈 비규제대안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임원의 중대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임권고시부터 실제 해임되는 기간까지 직무정지를 병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규제대안은 상정하기 어려움

〈 규제대안 :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병과 근거 마련 〉

-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시 해임권고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임권고를 직무정지와 함께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제도는 감독당국의 규제 여부가 아닌 그 수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간의 자율성·창의성과는 무관

〈 해외사례 분석 〉

- (미국)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는 공식 서면합의, 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해임 및 직무정지,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 법률에 근거\*하여,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미국 연방예금보험법(FDIA) Sec. 8(e)(3); 12 U.S.C. Sec. 1818(e)(3) :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연방준비제도위원회 등 각 업권별 감독기관(federal agency)에 의해 제재가 취해지며, 해임권고시 해당 임원의 부당한 직무로부터 금융기관을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직무정지가 가능

< 미국 연방예금보험법(FDIA) Sec. 8(e)(3); 12 U.S.C. Sec. 1818(e)(3) 원문 >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SEC. 8 TERMINATION OF STATUS AS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e) REMOVAL AND PROHIBITION AUTHORITY.

(3) SUSPENSION ORDER.

(A) SUSPENSION OR PROHIBITION AUTHORIZED. If the 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serves written notice under paragraph (1) or (2) to any institution-affiliated party of such agency's intention to issue an order under such paragraph, the 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may suspend such party from office or prohibit such party from further participation in any manner in the conduct of the affairs of the depository institution, if the agency-

(i) determines that such action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depository institution or the interests of the depository institution's depositors; and

(ii) serves such party with written notice of the suspension order.

(독일)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는 해임요구, 직무정지, 과태료, 서면경고, 경고, 주의로 구분되며,

○ 법률에 근거\*하여, 임원에 대한 해임요청과 함께 직무정지가 가능함

\* 독일 은행법(KWG) 제36조, 독일 보험회사감독법(VAG) 제87조 등

< 이해관계자 협의 >

사전협의 및 규정변경예고('15.11.6 ~ '15.12.16)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병과 근거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중대 위반행위를 저지른 임원이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금융질서 문란, 금융기관 운영 저해 등을 시정하고자 하는 해임권고 조치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됨
- 중대 위반행위를 저지른 임원이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진 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부당한 업무 수행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중대 위반행위를 저지른 임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고 제재의 형평성·적정성에도 부합하지 않음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비규제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규제대안으로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곤란함

< 결론 >

-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병과 근거 마련은 중대 위반행위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수행의 방지, 위법 시정기능 유도, 제재의 형평성·적정성 제고 등에 있어 현행유지안 및 고려 가능한 대안중 가장 우수하므로 도입 필요성이 상당함

###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현행유지안 :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병과 근거 미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정성적 분석	<input type="checkbox"/> 현행 규정은 위반행위를 한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와 직무정지를 동시에 조치할 수 없어,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병과 근거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해당 임원의 업무 수행으로 제재의 공정성·형평성에 반할 우려		
규제대안 :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병과 근거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정성적 분석	<input type="checkbox"/> 규제대안은 위반행위에 부합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 및 임원에 대한 사전적·자발적 위법 시정기능을 유도하고 위법·부당행위의 재발 방지 기대		

##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인력 및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
  -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대상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음
  - 금번 추가하고자 하는 직무정지 병과 제도는 검사결과 적발된 금융기관 임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직무정지 병과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인력·시일 및 예산 소요가 없음

###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기관제재의 경우 다수의 병과제도\*를 이미 운영해 오고 있으므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검사·제재규정 제29조(금융기관·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제30조(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등), 제31조(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시의 병과 등), 제32조(변상시의 병과)

###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해당사항 없음

##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 기술규제 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병과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은 임원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하급자인 직원제재 중심에서 임원·경영진 책임·기관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
  -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동일한 취지에서 중대 위반행위를 저지른 임원에 대하여 해임권고와 직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병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원의 중대 위반행위에 부합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금융기관 및 임원에 대한 사전적·자발적 위법 시정기능을 유도하고 위법·부당행위의 재발 방지 기대

####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사전협의 및 규정변경예고('15.11.6 ~ '15.12.16)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 (2) 임원 연속 위반행위 합산 제재를 위한 근거 마련

### 1. 규제의 필요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임직원이 당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거나 이전에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취하기에 근거가 부족한 구조임

\* (임원) 이전 금융기관 위반행위로 해임권고, 직무정지를 내리기 어렵고,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도 재직중 금융기관과 관련된 사유가 대부분

(직원) 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이 당해 금융기관에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구조로 이전 금융기관 위반행위로 현 금융기관이 직원에게 조치를 취하기 부담한 측면

○ 위반행위를 한 금융기관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이 감독기관의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제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

\* 검사를 개별 임직원이 아닌 금융기관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만 제재하고 있음

○ 또한 부적격자가 금융기관의 경영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금융기관 전반의 준법의식이 저하되고 이직 여부에 따라 제재수준이 달라져 한 금융기관에 장기간 근무한 임원\* 등 제재대상자간 형평성에도 문제

\* 동일 금융기관 재직기간 중 위반금액은 합산되어 상대적으로 양정수준이 높아짐

□ 따라서 퇴직한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에 대해서도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라면 이를 고려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필요

### < 임원의 연속 위반행위 사례 >

□ 現 KTB자산운용 대표이사 조재민은 3개 운용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15년간('99.11.~'14.6.) 임직원 매매 규제를 위반

\* '99.11.10~'09.5.7: 마이다스에셋, '09.6.5~'13.7.19: KB, '13.11.20~'14.6.18: KTB

- 위반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양정할 경우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 (→ 임원 결격사유)가 부과될 것이나,
- 검사대상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각각 제재함에 따라 '주의적경고' 이하의 경징계만\* 가능(→ 대표이사 직위유지 및 재선임 가능)

\* 마이다스에셋 및 KB자산운용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퇴직자위법사실통지 조치는 법률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

⇒ 15년간 불법행위를 해 온 자가 적발 후에도 금융기관을 계속 경영함으로써, 금융기관 전반의 준법의식을 저하시키고 금융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

#### 조재민의 3개 자산운용사에 걸친 불법 거래내역 및 양정수준

구 분	마이다스에셋 (대표이사)	KB (대표이사)	KTB (대표이사)	
위반기간	'99.11.10.~'09.5.7.	'09.6.5.~'13.7.19.	'13.11.20.~'14.6.18.	
매매일수	<b>667일</b>	<b>186일</b>	<b>10일</b>	
최대투자원금 (신규입금자금)	<b>3억 62백만원</b>	<b>50백만원</b>	<b>0원</b>	
거래규모	167억원	73억 57백원	2.2억원	
매매횟수	1,106회	304회	15회	
미신고 계좌수	2	4	4	
양정수준	신분제재	<b>위법사실통지</b> (직무정지 3월 상당)	<b>위법사실통지</b> (주의적경고 상당)	<b>주의적경고*</b>
	과태료	0 (제척기간 경과)	<b>25백만원</b>	<b>25백만원</b>

\* 양정기준상 “주의”에 해당하나, 여러 회사에 걸쳐 위반한 점을 고려 1단계 가중한 수준임

##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유지, 예금자·투자자 등 금융수요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법규 등을 위반한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 필요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

-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반복한 위반행위를 합산 제재하는 것은 책임 및 위반수준에 상응하는 제재를 통해 부적격자의 금융기관 경영참여 차단, 제재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것이므로 제재근거 신설이 필요

##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임원의 연속 위반행위 합산제재를 통해 임원 부적격자의 금융기관 경영 참여 차단, 임원의 준법의식 제고 및 제재의 형평성 등을 구현하고

- 이전 금융기관에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임원 부적격자에 대해 금융기관 경영진 선임의 사전적 차단 효과 기대

## 2. 대안의 발굴·검토

###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임원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 비규제대안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비규제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규제대안으로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곤란함

< 규제대안 >

-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이 금융기관을 옮겨 다니며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행한 경우, 과거 재직 금융기관에서의 위법행위도 함께 고려하여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임원과 달리 직원의 경우 소속 금융기관에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재가 이루어지므로 현 소속 금융기관의 지휘통제권이 미치지 않았던 이전 금융기관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현 소속 금융기관에 조치를 요구하기 곤란

- 다만 과거에 제재받지 않은 행위들만을 합산하여 양정수준을 고려하며 (→ 이중제재 문제 해소), 당해 위반행위를 주된행위자로서 실질적으로 주도한 경우로 한정(→ 책임의 정도 고려)

※ 징계시효(15.10월 금융기관 내규반영 행정지도 실시 완료) 및 제재시효제도 도입(16년 법개정 예정)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5년 이내 위반행위만 제재시 고려(→ 시간적 문제 해소)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임원의 연속 위반행위 합산제재 도입은 규제 여부가 아닌 그 수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간의 자율성·창의성과는 무관

< 타기관 사례 분석 >

- 해당사항 없음

< 이해관계자 협의 >

- 사전협의 및 규정변경예고('15.11.6 ~ '15.12.16)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현행 규정 하에서는 임원의 연속된 위반행위를 합산 제재하기 어려워, 위법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제재대상자간 형평성에도 문제의 소지**
  - 또한 규정 개정 없이, **법규 해석상**으로 연속된 위반행위를 **포괄 양정**하여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 명확한 근거 없는 포괄 양정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제재의 통일성,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칠 우려\***
      - \* 현행 검사는 개별 임직원이 아닌 금융기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에는 검사를 실시한 금융기관별로 구분하여 제재가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바, 규정변경 등 아무런 공표 없이 합산제재시 피조치자의 예측가능성 침해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비규제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규제대안으로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곤란함

< 결론 >

-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연속 위반행위 합산제재 도입은 **부적격자의 경영 참여 차단, 제재의 적정성·형평성 제고** 등에 있어 현행유지안 및 고려 가능한 대안중 가장 우수하므로 **도입 필요성이 상당함**

###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현행유지안 : 임원 연속 위반행위 합산제재를 근거 미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과규제자이외 기업소상공인			
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정성적 분석	<input type="checkbox"/> 현행유지안의 경우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이 여러 금융기관을 옮겨 다니며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위법 정도에 비례하여 제재가 상향되지 않는 문제점 존재 ○ 위법수준에 부합하지 못한 낮은 제재로(→ 임원 결격사유 미해당) 부적격자가 금융기관의 경영에 계속 참여 가능 <input type="checkbox"/>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여러 금융기관을 옮겨 다닌 임원과 한 금융기관에 장기 근무한 임원 간에 양정수준이 달라져 제재대상자간 형평성에도 문제		
규제대안 : 임원 연속 위반행위 합산제재 근거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과규제자이외 기업소상공인			
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정성적 분석	<input type="checkbox"/> 규제대안은 위법수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제재대상자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임원의 연속된 위반행위 적발시 가중제재하여 이전 금융기관에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임원 부적격자에 대해 금융기관 경영진 선임의 사전적 차단 효과 기대		

##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인력 및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
  - 금융감독원은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 제재대상 및 수준별로 ①임원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거나 ②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③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 금번 추가하고자 하는 임원 연속 위반행위 합산제재는 검사결과 적발된 임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수준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인력·시일 및 예산 소요가 없음

###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임원의 위법·부당행위가 그 성질상 과거 재직 금융기관에서도 반복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과거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주된 행위자로서 연속된 위반행위를 적발해 낼 수 있음
    - 임원의 동일 금융기관 재직 중의 연속된 위반행위는 이미 합산 제재하고 있으므로 감독당국이 검사·제재 업무시 임원의 연속된 위반행위를 합산제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집행 가능
    - 금융기관 검사과정에서 해당 임원이 다른 금융기관(과거 재직 금융기관)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했을 개연성이 발견되는 경우 연계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 사전통지(1주일전) 후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범위를 위법·부당행위 개연성이 발견된 사항으로 한정
- \* 검사는 금융기관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검사실시통보서'를 발부하여 실시하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현장검사가 아닌 서면검사 실시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연속된 위반행위 합산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은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한 제재를 취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임원의 자체적 위반행위 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필요
- 임원의 연속된 위반행위 합산제재를 위한 근거 신설로 인해 규제가 일부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 이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임원의 책임정도에 부합하는 제재를 통해 부적격자의 금융기관 경영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금융기관 전반의 준법의식 제고 및 제재의 형평성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 과도한 제재 강화가 아닌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규제 합리화에 해당

####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이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부합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부적격 임원이 다수의 금융기관을 옮겨 다니더라도 가중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 및 임원에 대한 사전적·자발적 위법 시정 기능을 유도하고 위법·부당행위의 재발 방지 기대

####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사전협의 및 규정변경예고('15.11.6 ~ '15.12.16)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b>대상 III</b>	<b>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b>
---------------	----------------------

< 규제의 개요 >

<b>1. 규제사무명</b>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b>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b>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이영평
	담당부서(과)	금융제도팀		직급	사무관
	국장	손병두		연락처	02-2156-9683
	과장	김연준		이메일	ypyunglee@korea.kr
<b>3. 근거법령·고시 등</b>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2>				
<b>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b>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금융기관 전체				
<b>5. 규제존속기한</b>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별도설정 불필요 - 훈령 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의해 감독규정 전체에 대한 존속기한 기설정 및 운영중				
<b>6. 구분</b>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화				
<b>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b>	<input type="checkbox"/> 현행규제내용 ○ 위반행위기간이 180일 이내 (일평균)기본과징금의 0.1%, 180일 초과시 기본과징금의 0.2% 가중 ○ 위반행위 횟수 : 최근 3년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내 가중 <input type="checkbox"/> 신설(강화)규제내용 ○ 위반행위 장기화 및 반복적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제도 강화 ○ 현행 2단계 가중(180일 이내 0.1%, 180일 초과 0.2%)을 3단계*로 강화 * 180일 이내 0.1%, 180일 초과~365일 이내 0.2%, 365일 초과 0.4%				

	<p>○ 최근 3년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 20%내에서 가중(현행 10%)</p>
<p><b>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b></p>	<p>과징금 부과시 고려사항을 금융업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및 고시에 위임하는 체계</p> <p>* (예) 은행법제65조의4(과징금부과) → 은행법시행령제26조의3(과징금의 부과통지등) → 검사·제재규정 별표2(과징금부과기준)</p>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  
-----  
----- 100분의  
20-----  
-----  
-----.

(이하 생략)

## 1. 규제의 필요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과징금 부과시 ①위반행위 기간 및 ②위반행위 횟수를 감안하여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으나, 그 가중수준\*이 낮아 제재 실효성 확보에 한계

\* ① 위반행위 기간 : 2단계 가중 구조로, 위반행위 180일 이내 (일평균)기본과징금의 0.1%, 180일 초과시 기본과징금의 0.2% 가중

② 위반행위 횟수 : 최근 3년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내 가중

- 또한, 타기관 사례\*(공정위, 방통위)에 비해 현행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가중하는 기준이 현저히 낮은 수준

\* <타기관 사례 분석> 참조

###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과징금은 위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 환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제재로서, 정부는 그 부과방법 및 가중·감면 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

- 특히, 위반행위 지속기간이 길거나, 빈번히 법규를 위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가중기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
  - 또한, 위반행위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징금은 커지므로 위규행위를 보다 신속히 자체 시정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
-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됨에 따라 위규행위 재발 방지 등 사전 억제력 제고

## 2. 대안의 발굴 · 검토

###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1년 이상 지속된 위반행위와 6개월~12개월 지속된 위반행위의 가중기준에 차이가 없으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자체시정을 유도하는 효과 낮음
- 최근 3년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 받은 금융기관이 다시 다른 위법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해 가중할 수 있는 수준이(기본과징금의 10% 이내) 타기관 사례\*에 비해 낮은 수준

\* <타기관 사례 분석> 참조

< 비규제대안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비규제대안은 고려하기 곤란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취득한 이익규모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제재)을 부과하는 것임

< 규제대안 >

위반행위 기간을 3단계로 구분하여 과징금 가중

- 180일 이내 (일평균)기본과징금의 0.1% 가중, 180일 초과 ~ 365일 이내 0.2%, 365일 초과 0.4%

	기존	개정안
180일 이내	0.1% 가중	0.1% 가중
180일 초과 365일 이내	0.2% 가중	0.2% 가중
365일 초과		0.4% 가중

최근 3년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20% 범위내 가중

타기관 사례(공정위, 방통위)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나 제도 도입 초기에 금융기관 부담이 갑자기 높아지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과징금 가중제도는 위반 내용 및 수준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님

< 타기관 및 해외 사례 분석 >

□ 금융위·공정위·방통위 간 비교

구분	금융위(금융관련법 위반)	공정위(공정거래법 위반) <sup>주1)</sup>	방통위(방송법 위반) <sup>주2)</sup>	비교
위반 행위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과대상 : 일평균위반금액 기준 기본과징금*</li> <li>* 위반금액 등 × 부과비율</li> <li>6개월 내 : <b>0.1%</b></li> <li>6개월 초과 : <b>0.2%</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과대상 : 산정기준*</li> <li>* 매출액등 × 위반행위 중 대성 감안 부과비율</li> <li>1년내 : 산정기준 유지</li> <li>1년 초과 2년 이내 : <b>10%</b></li> <li>2년 초과 3년 이내 : <b>20%</b></li> <li>3년 초과 : <b>50%</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과대상 : 기준금액*</li> <li>* 매출액등 × 위반행위 중 대성 감안 부과비율</li> <li>2개월 이내 : 유지</li> <li>2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b>10%</b></li> <li>6개월 초과 1년 이내 : <b>20%</b></li> <li>1년 초과 2년 이내 : <b>30%</b></li> <li>2년 초과 : <b>50%</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위) 타 부처에 비해 <b>위 반 행 위 기간 구분 단계가 좁음</b></li> <li>(금융위) 부과대상산출방법이 상이하 <b>가 중 비 율 수 준 이 낮 음</b></li> </ul>
위반 행위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과대상 : 기본과징금*</li> <li>* 위반금액 등 × 부과비율</li> <li>최근 3년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시 <b>1회당 10%</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과대상 : 산정기준*</li> <li>* 매출액등 × 위반행위 중 대성 감안 부과비율</li> <li>과거 3년간 2회이상 경고 이상 조치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 3점 이상 : <b>20%</b></li> <li>과거 3년간 3회이상 경고 이상 조치 받고 위반 횟수 가중치 5점 이상 : <b>40%</b></li> <li>과거 3년간 4회이상 경고 이상 조치 받고 위반 횟수 가중치 7점 이상 : <b>50%</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과대상 : 기준금액*</li> <li>* 매출액등 × 위반행위 중 대성 감안 부과비율</li> <li>최근 3년간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3회이상 받은 경우 1회당 <b>20%</b></li> <li>* 동일한 위반행위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예시</b></li> <li>-(금융위)과징금 2회, 기관경고 1회 받은 금융사 <b>20% 가중</b></li> <li>-(공정위)과징금 2회, 경고 1회 받은 회사, <b>40% 가중</b></li> </ul>

주1)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위) IV.2. 가 및 나(위반행위기간 및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조정)

주2)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통위) 별표3(필수적조정금액)

해외사례

- 미국의 경우 과징금 산정시 “과거 동일한 위반을 행했는지 여부”, “통지전 위반의 지속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산정하고
- 영국의 경우 “위반의 빈도”를 제재금 결정과정의 5단계 중 2단계(위반 행위의 중대성)에서 고려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협의 >

- 사전협의 및 규정변경예고('15.11.6 ~ '15.12.16)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기존 규제 적용시, 위반행위 기간이 상이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동일한 가중수준이 적용되므로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가중할 수 없음
- 또한 금융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위반행위 재발시 보다 강력한 사후처벌을 부과할 필요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법규위반사항에 대해 제재 조치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비규제 대안은 상정하기 어려움

< 결론 >

- 과징금 가중기준을 강화하는 규제대안은 금융기관의 신속한 자체시정을 유도하고, 제재의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규제안보다 유리

###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현행유지안 : 위반행위기간(180일 이내 0.1%, 180일 초과 0.2%), 위반행위 횟수(최근3년내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10%이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해당사항 없음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정성적 분석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지속된 위반행위와 6개월~12개월 지속된 위반행위 간 가중수준의 차이가 없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자체시정을 유도하는 효과 낮음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가중기준은 기본과징금의 10% 이내로 타기관 사례에 비해 낮은 수준		
규제대안 : 위반행위기간(180일 이내 기본과징금의 0.1% 가중, 180일 초과 ~ 1년 이내 0.2%, 1년 초과 0.4%) 위반행위 횟수(최근3년내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20%이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해당사항 없음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정성적 분석		<input type="checkbox"/> 규제대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를 할 유인을 제공하는 등 위반행위 지속기간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있도록 함  <input type="checkbox"/> 반복적 위반행위시 보다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 억제라는 감독목적보다 효율적으로 달성 가능		

##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기존 과징금 산정방식에서 위반행위 기간별 가중비율만 변경하면 되므로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 소요 없음

- 과징금은 법정 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산정한 기본과징금에 위반행위 기간 등에 따른 가중 등을 거쳐 최종 결정 됨

$$\boxed{\text{법정 부과한도액}} \times \text{기본부과율} \times \boxed{\text{기본과징금}} \pm \text{가중·감경 및 조정} = \boxed{\text{과징금 부과액}}$$

- 금번 개정안은 과징금 가중금액 산정시 위반행위 기간을 2단계 → 3단계로 변경하여 가중비율만 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 인력 및 예산으로 집행 가능

###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현행 과징금 가중기준 산정하는 방식에서 가중치만 변동하는 것으로 기술적 어려움 없음

###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규제대안은 금융기관의 보다 신속한 시정 유도할 수 있고, 위반행위 기간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재발방지 측면에서 현행유지안 보다 우월
- 강화된 가중기준도 타기관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움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과징금 가중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제재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다 엄중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사전협의 및 규정변경예고('15.11.6 ~ '15.12.16)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b>대상 IV</b>	<b>금전제재에 대한 가중사유 신설</b>
--------------	-------------------------

< 규제의 개요 >

<b>1. 규제사무명</b>	금전제재에 대한 가중사유 신설				
<b>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b>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이영평
	담당부서(과)	금융제도팀		직급	사무관
	국장	손병두		연락처	02-2156-9683
	과장	김연준		이메일	ypyunglee@korea.kr
<b>3. 근거법령·고시 등</b>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2>, <별표3>				
<b>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b>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금융기관 전체				
<b>5. 규제존속기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별도설정 불필요</li> <li>- 훈령 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의해 감독규정 전체에 대한 존속기한 기설정 및 운영중</li> </ul>				
<b>6. 구분</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강화				
<b>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b>	<input type="checkbox"/> 현행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법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신용질서 훼손여부, 부당이익규모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 등으로 타법 사례에 비해 매우 한정적임</li> </ul> <input type="checkbox"/> 신설(강화)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방해, 고의·중과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위반행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등 <b>과징금·과태료 가중사유 범위 확대 신설</b></li> </ul>				
<b>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b>	<p>과징금·과태료 부과시 고려사항을 금융업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및 고시에 위임하는 체계</p> <p>* (예) 은행법제65조의4(과징금부과), 제69조(과태료) → 은행법시행령제26조의3 (과징금의부과통지등) → 검사·제재규정 별표2(과징금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p>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과징금·과태료 가중사유 각 6개 신설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별표 2&gt; 과징금 부과기준</p> <p>5. 기본과징금의 조정</p> <p>가. (생략)</p> <p>나. 가중 사유 및 비율</p> <p>(1) ~ (5)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lt;별표 2&gt; -----</p> <p>5.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p> <p>(1) ~ (5) (생략)</p> <p><u>(6)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u></p> <p><u>(7) 검사가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u></p> <p><u>(8) 위반자의 소속 임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포함한다)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u></p> <p><u>(9) 검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으로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u></p>

<p>&lt;신 설&gt;</p>	<p>100분 3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10) <u>검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변조 등으로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u></p>
<p>&lt;신 설&gt;</p> <p>다. (생 략)</p>	<p>(11) <u>다수의 위반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u></p> <p>다. (생 략)</p>
<p>&lt;별표 3&gt; 과태료 부과기준</p> <p>1. ~ 3. (생 략)</p> <p>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가. 가중 사유</p> <p>(1) ~ (2) (생 략)</p>	<p>&lt;별표 3&gt;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p> <p>가. -----</p> <p>(1) ~ (2) (현행과 같음)</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3) <u>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u></p> <p>(4) <u>검사가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u></p>
<p>&lt;신 설&gt;</p>	<p>(5) <u>위반자의 소속 임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포함한다)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20%</u></p>

<u>&lt;신 설&gt;</u>	<u>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u>
<u>&lt;신 설&gt;</u>	<u>(6) 검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으로 검사 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3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u>
<u>&lt;신 설&gt;</u>	<u>(7) 검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변조 등으로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2 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u>
(이하 생략)	<u>(8) 다수의 위반자가 관련된 상황 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 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20%이내 에서 가중할 수 있다.</u>
	(이하 생략)

## 1. 규제의 필요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과징금 가중사유는 위법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신용질서 훼손 여부, 부당이익규모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 등으로 타법 사례에 비해 매우 한정적임
  - 과태료 가중사유 역시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사유만을 두고 있음
  - 과징금의 경우 신용질서 훼손 및 부당이득 규모에 대한 산정기준이 모호하여 동 기준을 적용한 가중부과 사례도 매우 드문 상황
  - 금융기관의 다양한 위반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과징금·과태료 가중 근거 부족으로 인해, 위반행위 억제력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과징금·과태료 가중제도의 역할 수행에 한계 발생

###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독당국의 검사행위 등을 방해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할 필요
- 또한, 정부는 합리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공표함으로써 제재의 예측 가능성 및 사전 억제력을 제고할 필요

###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과징금·과태료 가중 사유를 보다 세분화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다양한 위반행위에 대응 가능하고 위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자체 노력 촉구 가능

- 검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사유 근거 신설로 인해 적법한 검사 절차 이행시 금융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할 수 있음
- 위반행위의 경중을 감안하여 처벌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제재의 형평성 제고 가능

## 2. 대안의 발굴 · 검토

###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과징금·과태료의 가중 범위가 타기관 사례\*에 비하여 일부 사유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위규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곤란

\* <타기관 사례 분석> 참조

- (과징금)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신용질서 훼손시, 부당이득 규모가 기본과징금보다 클 경우 등으로 한정
- (과태료)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로 과태료 가중사유 한정

< 비규제대안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법규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비규제대안은 고려하기 어려움

< 규제대안 >

□ 과징금 가중사유 신설(검사·제재규정 별표2 제5호나목(6), (7), (8), (9), (10), (11))

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조 : 50% 가중

② 검사가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

\* 고의로 해당 위반상태를 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비난의 정도가 상당함

③ 위반자의 소속 임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포함한다)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위) 가중사유 中 (5) 참조 : 10% 가중

④ 검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으로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 30이내에서 가중\*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위) 가중사유 中 (4) 참조 : 40% 가중

⑤ 검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으로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위) 가중사유 中 (4) 참조 : 30% 가중

⑥ 다수의 위반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위) 가중사유 中 (1) 참조 : 30% 가중

□ **과태료 가중사유 신설**(과징금과 동일, 검사·제재규정 별표3 제4호가목(3), (4), (5), (6), (7), (8))

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20%이내에서 가중\***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참조 : 50% 가중

② **검사가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20%이내에서 가중\***

\* 고의로 해당 위반상태를 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비난의 정도가 상당함

③ **위반자의 소속 임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포함한다)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20%이내에서 가중\***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위) 가중사유 中 (5) 참조 : 10% 가중

④ **검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으로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30%이내에서 가중\***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위) 가중사유 中 (4) 참조 : 40% 가중

⑤ **검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으로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20%이내에서 가중\***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위) 가중사유 中 (4) 참조 : 30% 가중

⑥ **다수의 위반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20%이내에서 가중\***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위) 가중사유 中 (1) 참조 : 30% 가중

## 나. 대안의 분석

###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금융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위해 가중사유를 신설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님

### < 타기관 및 해외 사례 분석 >

□ 금융위·공정위·방통위 간 과징금·과태료 가중사유 비교

구분	금융위(금융관련법 위반)	공정위(공정거래법 위반)	방통위(방송법 위반)	비교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행위의 기간에 따른 가중</li> <li>■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융관련법규 위반행위를 한 자: 10%</li> <li>■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된 경우: 20% 이내</li> <li>■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 초과차액만큼 가중</li> <li>■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행위의 기간에 따른 가중</li> <li>■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3년 2회~4회 이상시 위반횟수 가중치 따라 100분의 50 이내</li> <li>■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 10~30%</li> <li>■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에 응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 30% 이내</li> <li>■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10~40%</li> <li>-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10%~30%</li> <li>- 기타사유: 5~20%</li> </ul> </li> <li>■ 위반사업자의 이사등 (등기부 등재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행위의 기간에 따른 가중</li> <li>■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3년 3회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 3회부터 1회당 10%</li> <li>■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 30% 이내</li> <li>■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은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0% 이내</li> <li>■ 위반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리하는 자,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 타 부처에 비해 과징금·과태료 가중사유의 범위가 한정되고 가중비율 수준도 낮음</li> </ul> <p>※ 참고 조문 (공정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3(2차조정 -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면) (방통위)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4(추가적조정금액)</p>

	<p>특별이익 제공 약속 금액의 50%가 기본과 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가중</p>	<p>불문)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 5%~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조치는 받은 경우: 5~20%</li> <li>■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 10% 이내</li> </ul>	<p>해하거나 이용자에게 허위로 응대하도록 요청: 20%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점유율이 증가: 30% 이내</li> <li>■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 10% 이내</li> </ul>	
<p>과태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융관련법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10% 이내</li> <li>■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0% 이내</li> </ul>	<p>(기업결합신고위반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30% 이내</li> <li>■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기업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당해 사업자의 지연 신고 이외의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경우: 20% 이내</li> <li>■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 심사결과 위법한 기업결합으로 결정된 경우: 30% 이내</li> <li>■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 10% 이내</li> </ul> <p>(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별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 가중</li> <li>■ 공시의무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가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과권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배의 범위에서 가중</li> <li>■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직전 부과 과태료의 2분의 1 가산</li> </ul>	

□ 해외 사례

- 미국의 경우 과징금 산정시 “고의성 여부”, “통지후 위반의 계속 여부”, “은폐 여부” 등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산정하고
- 영국의 경우 “위반행위의 고의성 여부” 등을 제재금 결정과정의 5단계 중 2단계(위반행위의 중대성)에서 고려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협의 >

- 사전협의 및 규정변경예고('15.11.6 ~ '15.12.16)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현행 제도하에서는 가중 사유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위반행위 내용에 대응하여 비례적으로 제재를 가중할 수 없는 문제점 발생
- 특히, 감독당국의 검사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원이 위법행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우 등 내용이 나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할 수 없음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법규위반사항에 대해 제재 조치로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규제 외적 대안은 상정하기 어려움

< 결론 >

- 과징금·과태료 가중사유를 보다 세분화하는 규제대안은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제재를 가중할 수 있고 다양한 위반행위에 대응 가능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규제대안보다 유리

###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b>현행유지안</b> : 재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된 경우 등, 부당 이득액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가중사유 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준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해당사항 없음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준비용				
정성적 분석		<input type="checkbox"/>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가중사유 범위가 한정되어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제재 차등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과징금·과태료의 가중사유의 범위가 타기관 사례에 비해 한정된 수준		
<b>규제대안</b> : 과징금·과태료 가중사유 추가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준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해당사항 없음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준비용				
정성적 분석		<input type="checkbox"/> 규제대안은 위반행위 내용에 따라 차등하여 과징금·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으므로 제재 형평성 제고 가능 <input type="checkbox"/>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강화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 억제라는 감독목적보다 효율적으로 달성 가능		

##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금번 개정안은 과징금·과태료 가중·감면 사유를 신설하는 것에 불과함
  - 또한, 기존의 과징금·과태료 산정체계 하에서 신설된 가중·감면 사유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소요 없음

###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검사 방해 및 위반행위에 고의·중과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등 과징금·과태료 가중사유가 명확하고, 과징금·과태료 산정방식도 기존과 동일하므로 기술적 어려움 없음

###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해당사항 없음

##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 기술규제 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금전제재 가중사유 신설은 제재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신분제재에서 기관제재로 제재의 중심축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일환

- 규제대안은 다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과징금·과태료를 가중하는 것으로 제재의 형평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현행 유지안 보다 우월
- 행정집행력 투입 수준 대비 위반행위 억제력 등 과징금·과태료 가중 제도 도입효과 측면에서도 규제대안이 현행유지안 보다 우위
- 한편, 과징금·과태료 가중사유 신설로 인해 금융기관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으나,
  - 타기관에 비해 느슨했던 금전제재를 현실화 하는 수준이고
  - 신설된 가중기준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타기관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움

####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검사 방해 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어 원활한 검사의 이행이 담보되는 등 감독업무의 효율성 증대
- 과징금·과태료 가중사유 신설로 인하여 위반행위 내용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차별적으로 부과 가능하여 과징금·과태료 가중 체계의 신뢰성 제고
-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 제재를 통하여 법규 위반행위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

####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사전협의 및 규정변경예고('15.11.6 ~ '15.12.16)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